

# 「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02일 지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, 2020년 11월 0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### 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 근거 법령(안 제3조)
- 나.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(안 제6조)
- 라.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(안 제8조)
- 마. 환수, 징계요구 등의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(안 제9조)

### 3. 검토의견

#### ○ 본 조례안은

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취지가 있습니다.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
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 근거 법령  
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 
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 
안 제8조에서는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
안 제9조에서는 환수, 징계요구 등의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 
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조례안은

행정안전부의 “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제정 요청”에 따라  
관계법령을 근거의 자치법규안을 기준 한 것으로  
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,

- 입법례는 전국적으로 100여개 지자체에서 실행하여 제정률 43%이며,  
강원도는 7개 지자체(속초, 양양, 영월, 원주, 철원, 춘천, 횡성)에서  
실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#### 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,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,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,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